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대구 달서구)

□ 민원 제목 : 월배지역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관련 대책 마련 요청

□ 신청 원인

- 관내 ○○유치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대책 마련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월배지역(진천동 일대)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선 폭 정도의 골목들이 도로와 보행로 구분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. 또한,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있는 실정임.
- 특히, ○○유치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및 과속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관련 부서에서는 월배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과 이면도로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.

□ 사실관계

- ○○유치원 인근은 15개 빌라 및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며,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, 주변에 월배 시장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.
- 또한,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8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, 생활 및 방범용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으나, 별도의 고정식 주차단속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음.

□ 관계법령 등

○ 「도로교통법」

- 제4조(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·관리기준 등)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,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,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은 주·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.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○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

- 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 ① 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차마(車馬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
2.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
3.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
4. 이면도로(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)를 일방통행로로 지정·운영하는 것

□ 판단 및 결론

- 관련부서(교통행정과, 주차관리과)에서 주정차금지구간 지정, 노면 정비 및 주차 단속안내 현수막 게첨, 이동식 cctv를 활용한 수시 단속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,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고정식 주차 단속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고,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강화, 주차장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표명 함.

□ 민원 제목 : 공공수영장 회원 모집시 신규회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시정 요청

□ 신청 원인

- 관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신규회원 모집과정에서 기존 회원을 우대한 회원접수 방식으로 신규회원의 진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강습을 위한 회원모집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, 초급반 모집과정에서 기존 회원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등 특정 시간대에 신규회원들의 진입이 어려움.
- 공공수영장이 특정 회원들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매우 불공정하며, 편의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운영관행으로 공정한 이용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장함.

□ 사실관계

-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은 1997년도에 준공되어 청소년체육팀 외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.
- 해당 시설은 청소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수영장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반 수영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.
- 기존회원들은 특정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강좌를 신청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임.

□ 관계법령 등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·운영과 체육 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- 제4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필요시 수시 점검·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판단 및 결론

- 현재 청소년수련관 수영 강좌 신청은 기존 회원 우선 재 등록 후 잔여분에 한해 신규회원을 받고 있어, 신규회원의 진입 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회원모집 시스템 변경 시 기존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담회, 여론 청취,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간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함.